

섬유·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지원으로 섬유·패션디자인 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존 창업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사업성공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창업보육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계명대학교 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섬유·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.

1. 섬유·패션디자인 개발
2. 섬유·패션디자인 창업인력 발굴 및 교육
3. 보육업체 관리
4. 기술정보제공 및 기술자문
5. 섬유·패션디자인산업 관련 산학 협동체계 구축
6. 기타 보육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

제2장 조직 및 임무

제3조(부서 및 업무분담) (삭제 2019. 2. 1.)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9. 2. 1.)

- ② 센터의 행정업무는 창업지원단 행정팀에서 담당하고, 센터에 연구위원, 전임연구원, 및 실습조교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7. 5. 15.)
- ③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,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임면) ① 센터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총장이 임면한다.(개정 2010. 10. 1.)

- ② (삭제 2019. 2. 1.)
- ③ 연구위원, 전임연구원 및 실습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(개정 2017. 5. 15.)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설치)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7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(개정 2019. 2. 1.)

- ②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
2. 예·결산 및 사업심의
3.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장 재 정

제10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기부금 및 보조금, 연구 및 교육사업의 수익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회계) 센터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(예·결산 및 사업) 센터장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서(사업계획서 첨부)와 결산서(사업보고서 첨부)를 각각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장 처 우

제13조(처우)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연구위원, 전임연구원 및 실습조교에 처우는 당사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며,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.

제6장 기 타

제14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